



해외양돈

최근 덴마크의 양돈산업 현황(II)

윤주성역

(본회 전북도협의회장)

<10월호 P69에서 계속>

6. 덴마크양돈의 최근 화제

(1) 육종시스템의 변경

육종시스템이 재구축되면서 농장의 현장검정이 실시되고 있다. 이로써 연간 검정두수는 현재의 1만두에서 7만 5천두로 증가될 예정이다. 그 결과 개량이 빨라지고 검정시설과 생산현장과의 환경차가 축소됨으로써 육종에서 생산으로 개량 결과가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이 기대된다.

(2) 거세 안한 수퇘지의 비육

수퇘지는 거세돈에 비해 적육량이 많고 사료 요구율이 낮기 때문에 생산자, 소비자 양쪽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며, 또한 거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조리시 불쾌한 냄새(옹취)가 나는 경우도 있으므로(그 비율은 사료의 급여방법, 사료의 원료, 도살전 절식시간 등에 따라 다르고 또한 농장간 차이가 크지만 대개 5~7%), 이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해 이용되는 것이 덴마크식육연구소가 개발한 분석장치로서 도축장에서 옹취의 정도와 관련이 있는 등지방중 스카톨 함량을 측정하여 기준치 이상인 돼지를 라인에서 제거한다. 현재 각 도축장에 이 장치의 설비가 도입되고 있으며 199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사양관리 측면에서 제거되는 비율을 줄이기 위한 시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제거율을 2%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3) 질병예방과 컨트롤

덴마크에서도 농장에서 식탁까지 돈육의 좋은

위생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EC통합과 함께 덴마크의 생산자들로서는 골치아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덴마크에서는 육종농장이 SPF 또는 MS(마이코플라즈마 폐렴만이 상재하고 있는 상태)농장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 위생상태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다른 EC각국은 덴마크 만큼 돈군의 위생상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종래와 같이 검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생상태를 잘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원산국과 전염병의 발생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에는 돼지가 덴마크에서 생산되어 미국이 인정한 식육처리장에서만 도살되었다는 증명을 의무화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즉, 미국인정 식육처리장에서는 수입동물이 있는 농장에서 온 돼지 또는 수입동물과 접촉한 돼지를 들이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입동물에는 적색 이표를 부착하여 구별하고 있다. 또한 수입업자는 이표를 부착한 돼지의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수의국은 수입업자와 이표를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다.

7. 덴마크의 분뇨처리규제

덴마크는 가축의 분뇨처리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법률로써 축종별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1)면적에 관한 기준

농장의 경지 1ha당 최대 사육두수는 소가 2.3가축단위, 돼지가 1.7가축단위, 기타 가축이 2가축단위로 규제되고 있다.

여기서 1가축단위란 1년간 사육할 수 있는 두수로서, 유용우가 1마리, 새끼딸린(25kg이하) 번

“
덴마크에서도 양돈장의 감소, 사육두수의 대규모화가 진행되고 있고 1980년 6만 8천호였던 양돈농가수가 1991년에는 2만 8천호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 이외로의 경영 이양이 보편화된 덴마크에서는 돈육의 국제가격변동요인도 있어 양돈산업을 사업으로서 매력을 느낀 젊은이들의 신규참여가 그리 신기한 일은 아니다.

”

식돈이 3마리, 비육돈이 30마리, 브로일러가 2,500마리, 채란계가 150마리 등이다. 따라서 100ha의 경지가 있는 경우 비육돈 5,100두를 사육할 수 있는 셈이다.

즉 가축의 분뇨는 토양환경이 원칙이며, 토지와 무관한 축산을 생각할 수 없다. 또한 토지가 충분치 않은 농장은 비축산농가와 임대계약을 맺어 필요면적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2)산포에 관한 규제

산포(散布)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규제가 있다. 슬러리의 산포시기는 4~6월의 3개월간으로 한정하고 시가지, 호수 및 음료수의 공동집수시설 가까이에 산포하는 경우의 규제, 산포후 12시간 이내에 입주할 것 등의 규제가 뒤따른다. 또한 산포시기가 한정되기 때문에 9개월간은 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설의 건설에 드는 자금은 자기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는 보조금 등의 우대제도가 있지만, EC의 보조정책 등도 아직 충분치 못하며 또한 그 적용기간도 한정되어 있다. 